

운 영 규 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(이하 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정관 제42조에 의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세부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복무·인사관리·보수·여비지급·위임·전결·예산·회계·문서관리·선거관리·회원관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의결권의 위임) 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[별표 1]에 의한 위임장을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차수
 2.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수
 3.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
- ②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는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속된 지부의 임원 또는 회원이어야 한다. 다만,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가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장 임원

제5조(임원의 선임·임기·선출방법 등) 임원의 선임·임기 등 제반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이사의 임무) 본 법인의 이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2. 지부 권역별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3. 지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.
4.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역할을 담당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회의)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회의 이외의 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.

1. 지부간 회의 : 각 지부 대표로 구성하며 각 권역에 속한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. 지부간 회의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소집 전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지부 회의 : 지부 회의는 각 지회로 구성하며 지부 대표가 의장이 된다. 지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며,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논의 한다. 회의의 개최는 지부에 속한 지회의 요청으로 소집 한다.
3. 사무국 회의 : 이사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, 법인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과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 1회 개최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8조(직제) ①이 법인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.

② 이사장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여건에 따라 적정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지휘 감독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2. 직원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제규정을 준수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.
3. 직원의 업무분담은 [별표 2]과 같다.

제9조(직원의 임용)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사무국장의 임용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직원의 보수) ① 직원의 보수 및 등급과 호봉은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.

제4장 정책위원회

제 11조(구성) 정책위원회는 이 법인의 자문기관으로써 본회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.

제 12조(기능) 이 법인의 정관 제28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, 이사장 및 이사회에의 자문, 기타 이 법인의 제반 사업의 자문 등에 응하며 이사장 직속기구로 운영한다.

제 13조(운영) 이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장 시·도 지부 및 시·군·구 지회

제 14조(지부·지회의 운영)

시·도지부 및 시·군·구 지회의 회계와 자산 등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.

제 15조(지부의 조건)

- ① 지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단위를 인정한다.
- ② 지부는 3개 이상의 지회가 등록될 시 인정한다.

- ③ 지부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CMS로 이행한다.
- ④ 지부의 회비는 중앙회비 납부 이외의 금액을 각 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 16조(지회의 조건)

- ① 지회는 각 개별 장애인야학 단위로 등록한다
- ② 지회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으로 한다.
- ③ 지회는 회비납부를 CMS로 성실히 이행한다.
- ④ 지회로 등록한 회원의 회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한다.
- ⑤ 지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전체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할 시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

제 17조(회비) ① 시·도 지회는 이 법인의 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정기회비를 이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기본 회비 : 매월 10만원을 기본 회비로 정하고, 각 지회는 이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 지부 또는 시·군·구 지회는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특별분

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분담금의 책정 및 납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.

제 6 장 자산·회계 및 사업

제 18조(보통재산) 보통재산의 운영은 별도의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위임장 서식

위 임 장

회의 명칭 :

회의 날짜 :

위 임 자 성명 :

소속 :

직위 :

주민등록번호 :

수 임 자 성명 :

소속 :

직위 :

주민등록번호 :

상기 본인은 수임자에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 (총회, 이사회, 기타) 중 제○차 (정기, 임시, 기타)회의의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임 자 :

(인)